

포르투갈신문평의회

I. 포르투갈 언론현황

포르투갈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고대로마제국 하에서 속어화 한 라틴어인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사용하며, 문자 해독률은 80%이다. 1974년까지의 우익독재시절엔 언론에 대한 탄압과 검열이 극심하였으나, 1974년 군사쿠데타 이후 정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쿠데타가 혁명으로 발전하면서 언론들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었고, 보도의 객관성을 무시하게 되었다. 현재 포르투갈 언론사들은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시설면에서 현대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의 완벽한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포르투갈은 가장 이름이 알려진 ANOP 통신사(Agencia Noticiosa Portuguesa)와 Unipress 통신사(Agencia Universal do Imprensa, Lda)를 비롯한 6개의 통신사가 있으나 규모가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통신사는 없다. 라디오 방송은 국영인 RDT 산하, 전국적 방송망을 가진 Antena 1, 2와 Radio Commercial이 있으며 가톨릭계인 RRC 라디오 방송이 있다. 한편 1988년 정부의 민영라디오 방송설립허가 조치 이후 각 지방에 불법적으로 산재해 있던 600여개의 해적방송이 통·폐합되어 현재 400여 개의 군소지방민영방송이 있다. 한편 TV 방송은 1957년에 개국한 RTP-TV 국영 방송국 산하 2개의 채널이 있다. 이 방송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국민을 위한 공공방송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 세력들로부터 뉴스 및 각 프로그램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상업 광고 방송화하여 흑자방송에 급급, 사회각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1864년에 설립된 Diario do Noticias를 비롯한 34개의 일간지와 Expresso, Tempo, Semanario, Sabado 등의 주간지가 있다. 신문 총 발행부수는 54만부이며 신문 보급률은 1천명당 54부이다. 1974년 군사혁명 이전에는 주로 은행이나 재벌그룹이 신문을 소유했으나, 이후에는 Expresso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국영화되었다. 포르투갈 신문은 거의 모두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용은 상당히 진지한 편이나 편집은 센세이셔널한 경향이 짙다. 일간신문은 대부분 조간이며 표준형이다. 신문은 주로 2대 도시인 리스본과 오포르토에서 발행되며 전국적으로 보급된다.

II. 신문평의회의 설립 및 구성

포르투갈 신문평의회는 영국의 신문평의회를 모범으로 하여 출판법 제 17조 규정에 근거, 정치권력 및 독점적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각 언론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신문평의회의 구성은 최고사법위원회가 임명한 의장 1인, 각 전문단체가 임명한 기자 6인, 편집에 관계하지 않는 언론종사자 중 각 전문단체가 임명한 노동자 대표 2인, 일간지발행협회 및 비일간지발행협회가 각각 임명한 신문사 경영인 2인, 각 신문의 경영에 관계하지 않는 사람 중 각 전문직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해 임명된 정기간행물 편집인 2인, 각 전문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호선된 2인, 자격이 인정된 사람 중 국회에 의해 선출된 시민 4인 등 19인으로 구성된다.신문평의회는 언론에 관계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그 입장을 밝히며 또한 출판법에 근거하여 정기간행물의 편집인 임명에 관계된 자료를 평가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해 권익이 침해되었다 하여 제기한 불만을 접수, 처리한다. 신문평의회는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평의회 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1차 재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문평의회가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이의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그 결정문을 7일 이내에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각 언론사에 대해 명령처분을 내릴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III. 신문평의회 정관

공화국 국회는 헌법 제 164 조 d)호와 제 169 조 2 항에 의거 다음 법령을 제정한다.

제 1 조(성격)

1. 신문평의회는 공화국 국회와 함께 독립적인 기구로써 임무를 수행한다.
2. 신문평의회는 헌법에 의거, 언론에 의한 사상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신문평의회활동의 목적과 범위는 정보에 관한 법이 공표될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다.

제 2 조(기능)

신문평의회는 다음과 같다.

- a)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 · 감시 한다.
- b)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의 표명과 대립을 가능하게 하며, 언론의 엄정성,객관성을 보장하고, 일반기준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대치되는 파시스트적 이념 및 이와 유사한 여타의 사상에 대한 옹호 혹은 선전을 금지시킨다.
- c) 언론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준수하는가를 감시하며, 또한 그 권리를 보호한다.

제 3 조 (권한)

1. 신문평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공화국 국회, 정부의 관계부처, 사회통신매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된 언론기업의 소유주 또는 관리 및 감사기구, 편집위원회와 각 편집인 그리고 편집분야의 노동조합 및 발행인 협회 등이 제기한 신문평의회 권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평의회 견해를 표명한다.
- b) 개인이나 단체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해 그 권익이 침해되었다 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접수 · 처리한다.
- c) 출판법에 명시된 독점방지법안의 작성에 자문형식으로 참여한다.
- d) 언론관계 학술모임이나 세미나 및 각종 회의를 활성화시키며, 이에 참여한다.
- e) 언론에 관계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그 입장을 표명한다.
- f) 출판법에 의거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부수와 배포를 조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 g) 출판법에 의거하여, 정기간행물을 분류한다.
 - h) 출판법에 기술된 사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지침에 생긴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 i) 출판법에 의거하여,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의임명에 관계된 재원을 8 일 안에 평가한다.
 - j) 출판계의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다음해 1 월 31 일까지 정교하게 작성, 이를 공화국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한다.
 - k) 동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다음해 1 월 31 일까지 정교하게 작성, 이를 공화국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에게 공표한다.
 - l) 동 위원회의 임무에 관계된 행정적인 결정사항, 입법활동 그리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보관할 문서 정리원(file clerk)을 둔다.
 - m) 동 위원회의 속성과 권한 내에서 국내 및 외국 단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 연락한다.
 - n) 출판, 정보의 자유 그리고 이의 제한규정에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신문평의회는 동 평의회에 제기된 불만사항을,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최대 30 일 이내에 결정한다. 동 평의회가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결정했을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은 7 일 이내에 그 결정문을 게재해야만 한다.

제 4 조(구성)

신문평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최고사법위원회가 임명한 의장 1 인
- b) 각 전문단체가 임명한 6 인
- c) 편집에 관계하지 않은 노동자 가운데서 각 전문단체가 임명한 노동자 대표 2 인
- d) 일간지발행협회 및 비일간지발행협회가 각각 임명한 신문사 경영인 2 인
- e) 각 신문의 경영에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중, 각 전문 직종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해 임명된 정기간행물 편집인 2 인, 이중 1 인은 일간지에서, 다른 1 인은 비일간지에서 각각 선출된다.
- f) 전항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자 중 각 전문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호선된 2 인.
- g) 자격이 인정된 자 중 공화국 국회에 의해 선출된 시민 4 인

제 5 조 (임기)

- 1. 전조 a) 및 b)항에 의해 임명된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 2. f) 및 g)항에 의해 임명된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며, 호선된 위원은 연임될 수 없다.
- 3. 평의회는 각 위원의 임기는 새 위원의 임명이 서면으로 통보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의장직)

- 1.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 b) 새 임기가 시작되기 최소한 45 일 이전에 각 위원에 대한 선출·임명 절차를 거치며, 이를 각 위원에 통보한다.
 - c) 신문평의회 의장 유고 시 부의장이 그 잔여임기동안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회의)

1. 평의회는 15 일에 한번 전체회의를 갖는다.
2. 평의회는 다음의 경우 전체회의 혹은 각 분야별 회의를 임시로 가질 수 있다.
 - a) 공화국 국회의장 혹은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b) 신문평의회 의장의 발의가 있을 경우
 - c) 평의회 구성원 5 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어느 경우에도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회의순서)

1. 회의순서는 평의회의 고유권한에 근거하여 그 우선순위를 평의회가 결정한다.
2. 평의회는 매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평의회의 한 위원이 제안한 주제를 의장이 당일의 토론에 부치지 않을 경우, 이는 평의회의 다음 회의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4. 회의 시작 전에 위원들이 당일 회의에 상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30 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족수)

1. 평의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2. 평의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해 채택된다.

제 10 조 (불참)

1. 평의회 위원은 다음의 불참규정에 의해 불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 a) 계속 3 번 불참했을 경우
 - b) 6 개월 동안 총 6 번 불참했을 경우
2. 전항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평의회는 해당위원을 임명한 기구와 상호연락하며, 그 대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평의회가 그 불참이 불가항력이었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된다.

제 11 조 (결의사항)

1. 평의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2. 가부등수인 경우, 투표를 다시 하며 그래도 가부등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2 조 (공표)

1. 평의회의 결정사항은,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항상 공표되어야 한다.
2. 평의회는 법에 규정된 의무적인 공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견과 연구결과가 특히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제 13 조 (청문)

의사일정에 포함된 특정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 평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업무단체)

평의회는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원들 중에서 단체(group)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단체에는 평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도 가입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5 조 (결원)

1. 평의회의 활동기간 중 발생한 공석은 최초의 임명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2.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
3. 해당 위원을 임명한 기관의 의도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신문평의회의장은 그 사실을 인지한 후 8 일 이내에 그 교체를 요구한다.

제 16 조 (출석표)

1. 평의회 위원은 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국가 최저 임금의 1/10 에 해당하는 출석표에 대한권리를 갖는다.
2. 평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된 경비는 평의회 위원에게 동등하게 상환된다.

제 17 조 (후원사업부)

평의회 업무처리와 서기직은 특별 후원사업에 의해 보장되며, 이에 관한 규정은 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 18 조 (재정)

후원사업을 포함하여 평의회의 활동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는 평의회가 제안한 자체예산으로 충당되며, 이 기금은 공화국 국회의 예산에 등록된다.

제 19 조 (내부규정)

1. 평의회 활동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평의회에 있다.
2. 이 규정은 공화국 국회의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공화국 국회 일지에 공표된다.

제 20 조 (임기 취득 및 개시)

1. 평의회의 현재 구성원은 동 법령에 근거하여 선임된 새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그 임기를 갱신함이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동 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30 일 이내에, 제 4 조에 의거하여 평의회의 구성을 책임지는 평의회의 의장은 성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3. 평의회의 구성원은 공화국 국회의장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고 각자의 신분증명서를 이용한다.

제 21 조 (정보수집)

1. 병원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자유에 반하거나, 출판의 자유 침해 및 남용에 관한 소송판결문 사본 1 부를 평의회에 송부한다.
2. 조합 및 전문단체 그리고 신문사는 도덕기준 위반과 정보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징계에서 표명된 결의사항의 복사본을 평의회에 송부한다.

제 22 조 (시설물)

평의회는 국가소유의 현행 시설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1978 년 4 월 27 일 승인됨.

공화국 국회의장 바스꾸 다 가마 페르난데스

1978 년 6 월 5 일에 공표됨

공표할 것

공화국 대통령, 안토니우 라말뉴 이아네스-수상, 마리우 소아리스